

개인정보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행정예고

- 개인정보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을 구체화하는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는 정보주체에게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였습니다. 동법 제37조의2는 규정 준수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과 고시로 위임하였고,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임에 따른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4. 5. 17.부터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고시안에는 정보주체의 거부권, 설명요구권, 검토요구권 등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구체적인 조치사항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고시안의 시행으로 자동화된 결정에 노출되는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보호와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며, 개인정보처리자 또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개요
2. 주요 사항
3. 시사점

1. 개요

2024. 3. 15.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는,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내지 해당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취할 조치 내지 설명에 대한 일반적인 항목을 정하는 외에 세부사항을 고시로 위임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시가 필요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 조치 기준」(이하 '조치 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조치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 기준에는 정보주체의 거부권, 설명요구권, 검토요구권 등 권리 유형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주요 사항

가. 자동화된 결정 등의 판단기준(조치 기준 제3조)

조치 기준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각종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화된 결정'의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을 의미),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하는 등 개별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린 결정으로서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나. 정보주체의 거부에 따른 조치(조치 기준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여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생명·신체의 안전과 관련 여부, 권리의 박탈 여부, 지속적인 제한 발생 여부, 회복가능성 여부 고려)이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리도록 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 실무 현실을 고려하여, 사람의 개입을 통해 재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에 따른 조치(조치 기준 제5조)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시행령 제44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공개된 사항 등을 활용하여 설명)을 제공하되, 정보주체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결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라. 정보주체의 검토 요구에 따른 조치(조치 기준 제6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검토를 요구한 경우, 이를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거나 정정한 후 재처리하며, 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려사항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마. 정보주체의 거부·설명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조치 기준 제7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주체의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바. (참고)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한 “자동화된 결정” 자율진단표



3. 시사점

이번에 행정예고된 자동화된 결정 관련 조치기준은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구체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병행하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초안을 공개하며 현장의 개인정보처리 실무자들이 조치 기준에 따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AI 등 신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개인정보 보호 환경이 한층 강화되고, 자동화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는 이번 고시 준수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낮추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으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신기술 혁신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화된 결정을 활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련 규제 동향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 제2항).

화우의 TMT 팀은 AI·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침 마련 등 각종 정부 활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과기정통부·방통위·국정원 출신으로 구성하여 TM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ntacts

이광욱

T. (+82) 2 6003 7535

파트너변호사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

정호선

T. (+82) 2 6182 8548

변호사

E. junghs@yoonyang.com

유현상

T. (+82) 2 6182 8716

변호사

E. hsryu@yoonyang.com

강석준

T. (+82) 2 6182 8505

변호사

E. kangsji@yoonyang.com

배종우

T. (+82) 2 6182 8745

변호사

E. jwbai@yoonyang.com